2021
6
Monthly Magazine
통권 211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회계 세무 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2021-6 세무회계경영저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이달의 특집

– 2021 소득세, 법인세 관련 주요개정내용 해설 (국세청)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국세청)

[주요정보]

· 2025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저변 최대 2배로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11개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 의결 (고용노동부)

안안세건회조계세법정인보

안세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6

+교육 · 훈련강의저널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
eAnSe
.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분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기업활동의 기존 계속 개념과 ESG 경영 개념의 차이 비교 10선 ····· 3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최종점검사항과 판단요점 ····· 4
· 실제기장신고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계산사례 ·· 5
· 비상장기업 가업승계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 측정방법 ·· 6

이달의 특집

· 2021 개정세법 중 소득세, 법인세 관련 주요개정내용 해설 (국세청) ····· 7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국세청) ····· 99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1(월)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1기분 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경영정보

· 2025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저변 최대 2배로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 ····· 130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11개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137

노무정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 의결 (고용노동부) ····· 140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5월) ·····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박윤종(대표이사)

◉ 2020년 귀속 개인 종합소득 신고(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시 주의사항

- 안세재경저널 2021/5/5일자 통권 1517호(표지)

1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 단순경비율 적용소득에 대한 소득가산배율이 2.8배(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임.

3 가족의 금융소득은 부부간이라도 합산하지 않고 각 개인별로 연 2천만원 초과금액을 각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함.

4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서명이 필수적임.

5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10년 이내 과거의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최종 소득에서 차감공제받아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음.

6 어쩌다 발생된 기타소득의 경우 법정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수입금액 즉 총액×40%에 대해서 20%의 원천세율로 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내용〉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 기업활동의 기존 계속 개념과 ESG 경영 개념의 차이 비교 10선

- 안세재경저널 2021/5/12일자 통권 1518호(표지)

개념구분	기업의 기존 활동(각자도생)	ESG경영개념 적용(사회 공존)
기업의 목적	이윤 추구,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 내외부 환경, 사회 등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제품 · 상품	많이 팔리고 기여이익이 큰 제품 우선	친환경 그린제품, 인체 무해한 프리미엄 달성
대기환경	최소기준 준수, 탄소배출 중심 규제 충족	기후변화 대응, 탄소 최소화와 대기오염물질 제거, 미세먼지 저감
오염물질	환경 관련 최소규제만 충족 수준	그린프로덕션(저탄소 제품, 온실가스 감축)
생산과정	생산효율 극대화, 물적투자, 가성비 높은 공정	근로 · 노동조건 향상, 스마트팩토리, 안전제일, 위험제거
원재료 구입	최저가 원재료 대량 구매할인 적용	AI, 빅데이터 활용한 원재료 적시 · 최저가 구입
신사업 진출	수직계열화 일괄생산체계 구축	타업종의 ESG에도 부합하는 신제품 연구 그린뉴딜
부산물 활용	부산물 염가처분, 폐기물 처리 등	부산물, 폐기물의 무한 재활용 자원화
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소비자, 금융회사, 적법경영	더해서 협력사 · 지역사회 · 국가 등과 소통채널, 윤리경영
사회공헌	현지 공장지역의 고용, 생산공장 위주 현지발전	사회 전체, 경제 · 일자리 활성화, 벤처펀드 활동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최종점검사항과 판단요점

- 안세재경저널 2021/5/19일자 통권 1519호(표지)

개념, 구분	종합소득의 범위,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방법	적용항목
종합소득범위	근로소득 + 이자·배당 + 사업소득 + 연금 + 기타소득의 합계액	
보험료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적보험료	근로소득
주택관련공제	무주택자 임차료 등 40%, 주택차입원리금 등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초과당 30만원	종합소득
보험료세액공제	사적보험료(연 100만원까지)의 12%(장애인용 15%)	근로소득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연봉 3% 초과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근로소득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초중고는 1인당 300만원, 대학은 900만원)의 15%	근로소득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의 15% 등	종합소득
각종 세액공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종소신고한 경우는 사업소득세액은 제외 적용함	종합소득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11% 가산하여 세액계산 후 11% 공제	배당소득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세액의 20%≦100만원 한도	사업소득
비교과세방법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까지의 분리과세 계산과 총소득 종합합산과세 중 큰 금액	금융소득

◉ 실제기장신고·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계산사례

- 안세재경저널 2021/5/19일자 통권 1519호(긴급시사해설)

업종	실제기장, 기준경비율 계산방법(복식기장자는 기준경비율 50%만 인정), 단순경비율의 배율방법	적용 판단
(가) 식료소매 등(빵집) (522061)	단순경비율 90.7%, 기준경비율 4.7%, 매출 3억, 입증자료 완벽 충분 ① 실제기장 : 3억-입증매입 0.9-입증 인건비 0.8 - 임차료 0.3 - 기타 0.06 = 94,000,000원 소득 ② 기준경비 : 3억-0.9억-0.8억-0.2억- 7,050,000(4.7%의 50%) = 92,950,000 소득 ③ 단순경비 : 3억×(1-0.907)×3.4배 = 94,860,000	소득은 ③ > ① > ②임 제일 적은 ② 가능하나, 가산세 20%추가 따라서 ① 방식으로 신고(20% 세액공제)
(나) 인적용역 (판매수수료) (940908)	단순경비율 75%, 기준경비율 24.4%, 매출 3억, 입증자료 중간 ① 실제기장 : 3억-매입 없음 0-입증인건비 1.2-기타 0.2 = 1.6억 소득 ② 기준경비율 방법 : 3억-1.2억-0.2억-36,600,000(24.4%×50%) = 123,400,000 소득 ③ 단순경비 : 3억×(1-75%)×3.4 = 255,000,000	①,②와 ③ 중 가장 적은 ②적용 ②+20% 가산세 부담해도 ①방법보다 적은 세금계산
(다) 내장공사 인테리어업 (452107)	단순경비율 91.2%, 기준경비율 12.1%, 매출 3억, 입증자료 일부 ① 실제기장 : 3억-입증매입 0.5-입증인건비 0.7-임차료 0.2-기타 0.1 = 1.5억 소득 ② 기준경비율 방법 : 3억-0.5억-0.7억-0.2억-18,150,000(12.1%×50%) = 141,850,000 ③ 단순경비 : 3억×(1-0.912)×3.4 = 89,760,000	①과 ②가 비슷하지만 ③이 현격히 적어 20% 가산세 부담해도 가장 유리함 (③채택 : 단순경비율 높아서 실소득보다 적음)
(라) 도매·상품 중개업 (511115)	단순경비율 79.8%, 기준경비율 21.6%, 매출 3억, 입증인건비 3천만원만 있음(매우 부족) 실소득은 1.5억 내외 ① 실제기장 : 3억-입증인건비 3천만원 = 2.7억 소득 ② 기준경비 : 3억-3천만-21.6%의 50%인 32,400,000 = 237,600,000원 ③ 단순경비 : 3억×(1-0.798)×3.4=206,040,000	입증경비 없거나 무자료이므로 ①과 ②보다 ③이 제일 적음. ③방법+20% 가산세 납부가 가장 유리함. (실소득보다 많음)
결론	(가) 매입자료 등 실제입증경비가 충분하면 ①실제기장신고가 유리(20% 세액공제 적용되며 연 100만원 한도 가능 : 외부기장료 상당금액 수준임) (나) ③단순경비율은 2.8(3.4)배를 곱한 후 적용되는데 단순경비율(매출원가율 등)이 95% 이상 매우 높은 경우 유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②기준경비율 소득이 ③보다 적으면 두개 중 적은 금액인 ②기준경비율로 신고함. (다), (라) 입증경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입증경비가 중요한 ①,②보다 ③단순경비율 금액이 제일 적어 ③으로 신고하며 20% 가산세 부담함	

◉ 비상장기업 가업승계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 측정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1/5/26일자 통권 1520호(표지)

개념, 원칙	계산방법, 주의점 등, 관련 근거규정 요약내용
주당가치계산	① 상장사 : 평가기준일 전 2개월 + 후 2개월 = 4개월간의 종가평균 ② 비상장사(일반) : 주당순손익 3년 평균가치×60% + 주당 순자산가치 ×40%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1. 일반 원칙	법인의 자산가치의 법정 평가액 - 부채 = 순자산가액(≧0, 최소 0)
2. 재고자산 등	시가, 장부가액
3. 예금 · 채권 등	① 예금 등은 예입액 + 기간이자미수수익 ②국공채 등 채권 · 유가증권의 시세(평가액)
4. 부동산 등	①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과 법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② 부동산 법정평가액 규정(토지는 개별공시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아파트 · 대단위 상가 등은 국세청 일괄고시가격 등)
5. 무형자산 등	선급비용과 무형자산은 차감함(없앰)
6. 권리확정금액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자산에 가산 · 합산함
7. 준비금 · 충당금	부채금액에서 제외(부채로 포함안됨)함 (단, 비용 확정된 충당금과 책임준비금 등은 부채로 반영함)
8. 영업권 금액	초과이익력 있는 영업권가액은 자산에 가산함(청산등 부실영업권은 제외)

이달의 특 집

2021 개정세법 중 소득세, 법인세 관련 주요개정내용 해설

- 국세청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 서화 · 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 ○ 개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관계법령】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 2020.12.29. 공포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 2021.2.17. 공포

01.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❶ (원칙) 수익자 ❷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❶ (좌 동) ❷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지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 위탁자 · 수익의 이익 :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2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의 구분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 소득원천별로 구분 ○ 소득원천별 구분의 예외 – 집합투자기구인 신탁 –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추 가>	○ (좌 동) –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3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

가. 개정취지

○ 서화 · 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 ·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 소득구분 명확화 ○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 · 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원천징수세율 20% ○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회화 · 데	(좌 동)

생 등 미술품(생존작가 작품 제외),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 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단서 삭제
<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 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5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6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21조)

가. 개정취지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타소득의 범위 ○ 상금, 복권당첨금, 사행행위 참가 이익, 경마환급금, 슬롯머신등 담청금 등 ○ 저작권, 광업권 등 자산·물품·장소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원고료, 재산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인적용역소득, 위약금, 보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 (좌 동)
<추 가>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07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7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취급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쟁송 시 소송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08 과세방법 및 세율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의2, 제92조, 제127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원천징수) ① 연금 외 수령 소득 : 15% ② 서화 · 골동품 양도소득 : 20% ③ 복권당첨금, 경마환급금 등,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 20%(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은 30%) □ 종합과세(신고) ④ 뇌물, 알선수재 · 배임수재 금품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⑤~⑦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 배상금 : 원천징수 미대상 ⑥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 15% ⑦ ①~⑥외의 기타소득* : 20% * 상금, 저작권·영화필름 등 자산·물품 등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	(좌 동)
<추 가>	□ 원천징수 하지 않고 분리과세 ○ 세율 : 20% ○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09 과세최저한 설정

(소득세법 제84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설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등 :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 10만원 이하 ○ 슬롯머신 등 당첨금(수입금액) : 건별 200만원 이하 ○ 기타 : 건별 소득금액 5만원 이하 <추 가>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최저한 설정 (좌 동) ○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0 과세자료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5조의4)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 제출의무 정보 ○ 회원정보 : 성명, 주민번호, 현금 입 · 출금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 과세표준, 거래일자 등 ○ 취급업소 간 / 취급업소와 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 등 : 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이전 시점의 시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출주기) : 분기별 / 연도별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고납부방법

(소득세법 제72조, 제76조)

가. 개정취지

○ 신고납부 절차, 적용시기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신고기간 : 5.1일 ~ 5.31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2021.12.31일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가. 개정취지

○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 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취급업소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 조정 허용 : Max(시행일 시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등) ▢ 2021.12.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❶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0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❷ ❶외의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022.1.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명칭 ○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기부금단체의 명칭 – 공익법인 – 공익단체

14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가. 개정취지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ⅱ)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가. 개정취지

○ 서민 · 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 (공제대상) ❶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 ❷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❸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좌 동)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좌 동)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❷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❸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소득세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의2)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세액 계산 방법 ❶ 일반적인 경우 세액 = [{주택임대소득 × (1 − 50%)} − 200만원*] ×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❷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세액 = [{주택임대소득 × (1 − 60%)} − 400만원*] ×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❸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조특법 §96)를 받는 경우 세액 = ❶또는 ❷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조특법 §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좌 동)
○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❷의 경우 : 4년 ❸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8년 ○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우대(❷ 또는 감면(❸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 연장 ❷의 경우 : 10년 ❸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 · 자동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

1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81조의11)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가산세율 50% 인하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고 ·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금융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채권 · 예금 등의 이자 · 할인액 등 <추 가>	 –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유형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 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분배금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분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발생하는 수익부터 적용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화에 따른 세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2020.12.31일까지 14%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 42% ○ (기타 이자소득) 14%	□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 특례 영구화 ○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 적용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 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추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가. 개정취지

○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좌 동)
<추 가>	○ 국가 ·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 ·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 · 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 (좌 동)
<추 가>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4 기부금대상 젲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지정요건 정비
❶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신 설>	❶(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에 해당시 요건 충족 간주 *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❷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❺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 ❷~ ❺(좌 동)
❻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❻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❼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❼3.31일 → 4.30일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 지정기간 : 지정일 이후 5년간	□ 지정기간 : 지정일 이후 3년간(재지정시 6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요건❶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요건❼ : 20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간 : 20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5 기부금대상 민간업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과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 · 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❶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 ·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❷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❸「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❹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❺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취소요건 정비 ❶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 § 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50의3) 추가 (좌 동) ❻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6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좌 동)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27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가. 개정취지

○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 (좌 동)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 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 기준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결정 ·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8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가. 개정취지

○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
❶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❶ 신고납부 → 신고
❷ 정부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 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 : 추가로 신고한 경우	❷ (좌 동)
❸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❸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❹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❹ 신고납부 →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변경(7세 미만 제외, '18년 법 개정사항) 반영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세율
<table>
<tr><th>월급여</th><th>간이세액표</th></tr>
<tr><td>1,000만원 이하</td><td>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td></tr>
<tr><td>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td></tr>
<tr><td>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td></tr>
<tr><td>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td></tr>
<tr><td>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td></tr>
<tr><td>4,500만원 초과</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td></tr>
</table>
○ 자녀세액공제 기준
– 20세 이하 자녀 수</td>
<td>□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최고세율 인상 반영
<table>
<tr><th>월급여</th><th>간이세액표</th></tr>
<tr><td>1,000만원 이하</td><td>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td></tr>
<tr><td>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98% ×35%)</td></tr>
<tr><td>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td></tr>
<tr><td>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td></tr>
<tr><td>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td></tr>
<tr><td>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td></tr>
<tr><td>8,700만원 초과</td><td>(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45%)</td></tr>
</table>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3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 ·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 의무발급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8개 업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의2)

가.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좌 동) ○ 3억 원 → 2억 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32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신설
○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477호) : 2020.8.18. 공포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 2020.12.2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083호) : 2020.10.7.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 2021.2.17. 공포

01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제88조)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원칙)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 (예외)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 신탁계약 해지권·수익자변경권·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등)

가. 개정취지

○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단, 1)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 2) 「자본시장법」(§ 110, § 189) 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 (세율) 과표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 ○ (기준시가) 「상증법」 상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규정 준용 (상증법 §65) ○ (세원관리) '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수익권(수익증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 수익권의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수익증권) ○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4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소득세법 제1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의3)

가. 개정취지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내용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수익자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31일까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신고기간까지)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내용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수익자별 수익권(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

0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

가. 개정취지

○ 분양권의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양권의 정의 신설 * (기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개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의 범위(근거 법률) 명확화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0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04조)

가. 개정취지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❶ (세율)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p ❷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❶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❷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 1주택 + 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비과세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미적용 – (좌 동) ※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0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가. 개정취지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종 전	개 정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❶❷❸중 어느 하나에 해당) ❶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❷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신규주택 완성전 또는 완성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❸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 ❶❷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 ❸은 입주권만 해당

② 상속 · 혼인 ·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종 전	개 정
□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❶ 일반주택+ 상속(입주권) ❷ 「일반주택+입주권」+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 ❷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혼인 ·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 (대상)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 1주택, ㉡ 1입주권, ㉢ 1주택 1입주권 →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 □ 문화재주택 또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입주권」 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상속 · 혼인 ·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0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167조의11)

가. 개정취지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종 전	개 정
□ 주택 ·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분양권 보유하는 경우 추가
○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 취학 ·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 · 군 또는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해당 주택	1주택 1분양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좌 동)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 · 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종 전	개 정
□ 주택 · 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예외	□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추가
○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상기 주택 외 1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좌 동)
○ (주택수 차감하여 계산) – 혼인으로 주택 · 입주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내 해당 주택 양도시 배우자의 주택 · 입주권의 수를 차감하여 주택 수를 계산	– 혼인으로 주택 ·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0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7조의3)

가. 개정취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❶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2018.3.31까지 등록분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9.13.까지 취득분 – 건설임대주택 등 ❷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 –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9.13.까지 취득분 – 건설임대주택 등	1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 단기임대주택 삭제,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2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2 10년으로 연장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20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변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2020.8.18.(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10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 개정취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과세 요건)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 (좌 동)

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 1채 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중이며,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 – 단기임대주택 :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사후 관리)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	– 임대등록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 임대등록 말소** 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2호 이상 임대시 최초로 등록말소되는 경우를 말함 ○ 임대주택 자진* · 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旣양도자에 대해 미추징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과세 요건) 2020.8.18.(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 2020.8.18.(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 · 자동 등록말소하는분부터 적용

11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가. 개정취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요건)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민간임대주택법 §6⑤) :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민간임대주택법 §6①11)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8.18.(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대상) 1세대 1주택 – 비조정지역 : 보유 2년 이상 – 조정지역 : 보유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상) 1세대 1주택 – 보유 : 3년 이상 – 거주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 (공제율) 24 ~ 80%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 순서에 따른 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 –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주택 거주자 ③ 최연장자 ※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순서와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좌 동)
○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 ~ 양도일 – (예외)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21.1.1 시행)	–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전출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가. 개정취지

○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	□ 3년 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 3년 기한의 예외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중 – 재개발 · 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청산금 지급 소송 또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 예외 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진행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5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적용대상)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 이상 거주한 주택(평생 1회) ○ (적용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 ① '18.9.14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 ② '20.7.11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③ '20.7.11 이후 단기 →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 비과세 혜택 대상 거주주택 범위 명확화 ① <삭 제> *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예규 해석에 맞춰 시행령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 제167조의3 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등록임대주택 · 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주택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신청시 구비서류 ○ (납세자 제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 등록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추 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을 추가 ○ (좌 동) – <삭 제> (좌 동)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소득세법 제95조)

가. 개정취지

○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상) 1세대 1주택자 ○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좌 동) ○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취지

○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 40% – 1년~2년 미만 : 기본세율 ○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 50% – 1년 ~ 2년 미만 : 4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좌 동) – 1년 미만 : 70% – 1년~2년 미만 : 60% (좌 동)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보유기간 불문 5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 : 6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 문화재주택 · 상속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좌 동)
<추 가>	○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 문화재주택 · 상속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등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좌 동)
<추 가>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조세특례제한법 §77조) – 토지보상법 ·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 · 양도되는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취학 ·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 위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좌 동)
<추 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2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세 조문 정비

(소득세법 제126조의3~12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5~제183조의9)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식 등(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부동산주식)	▢ 과세대상 조문정비 ○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등(국외주식 제외) ○ (좌 동)
▢ 기본공제금액 : 250만원	▢ 기본공제금액 : 연 5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 주식* : [5천만원] –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 상장주식,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 나머지 주식 : 연 250만원
▢ 구분계산 규정 ○ 국외전출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 (추 가)	▢ 구분계산 소득 추가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조문이동) 소득법 § 118의9 ~ § 178의18 삭제, § 126의3 ~ § 126의12 신설
소득령 § 178의8 ~ § 178의12 삭제, § 183의5 ~ § 183의9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2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8)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023년) 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 '20.4.1. ~ '21.3.31.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 비상장	4% 이상	

○ '21.4.1. 이후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3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 비상장	4% 이상	

○ '20.4.1. ~ '22.12.31.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 비상장	4% 이상	

<삭 제>

2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가. 개정취지

○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범위 ① 국내 ·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추 가>	□ CFD 추가 ○ (좌 동) ○ 아래 요건을 갖춘 장외 파생상품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 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③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④ 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신설)

가. 개정취지

○ CFD 투자에 따른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소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추 가>	□ CFD 양도차익 계산 ○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 89① ① 원칙: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②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 : ②의 가액에 20%가산
□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적용	○ (좌 동) * 단,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허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필요경비 산입 방식 폐지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 · 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57호) : 2020.12.29.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42호) : 2021.2.17.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848호) : 2021.3.16. 공포

0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허용

(소득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

가. 개정취지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종합소득금액}}$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 가>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필요경비 산입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소득세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0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등 ○ 제세 공과금 <추 가>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 (좌 동) ○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03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필요경비 산입 산입 방식 폐지

(소득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 산입 ○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손금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❶세액공제와 ❷손금(필요경비)산입 중 선택 가능 ❶ (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❷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 손금(필요경비) 산입 방식 삭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 요건 ○ 「법인세법」상 손비 <추 가>	□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 ○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 · 공동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 연구개발비를 매출액 · 매출총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① 매출액 방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보완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 국외	연구개발비용 × 50% × 외국자회사 등 매출 / 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 ×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② 매출총이익 방법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 국외	연구개발비용×75%×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 [매출총이익+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 × 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 ①매출액 방법, ②매출총이익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국외자회사 매출 · 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6조, 제156조, 법인세법 제92조, 제93조, 제98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과세대상)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하목 –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다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

<신 설>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 · 대여 · 인출시 : 가상자산 사업자 ○ (원천징수 금액)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 (납부방법)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세무서 등에 납부 $\text{인별 누적 원천징수액} \times \dfrac{\text{인별 인출액**}}{\text{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 * 현금 · 가상자산을 1년간 미인출시는 다음연도 1월10일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 × 수량 ○ (원천징수 대상 확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 · 확인 * 가능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 3년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 면제 적용 가능(비과세 · 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

06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3, 법인세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 소득구분 유지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	□ 현행 비거주자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유지

자소득 ○ 배당소득 :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파생결합사채·파생결합증권의 이익,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추 가>	○ 이자소득 : 2020년 세법개정으로 배당 → 이자로 분류되는 소득 제외 – '파생결합사채 이익' 제외 ○ 배당소득 :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여 현행 유지 – 파생결합사채 이익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일부 분배금* 비과세 → 과세) *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제외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양도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소득세법 제164조의2, 법인세법 제120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절차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 ·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자 <추 가>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 (좌 동) –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
○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 *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 가상자산 규정 정비 ○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2호) : 2020.12.22.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3호) : 2021.2.17. 공포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법인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 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 위탁자 • 수익의 이익 :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좌 동)
<신 설>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대상) ①~③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제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의 수탁자*가 선택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①「신탁법」제3조에 따른 목적신탁 ②「신탁법」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신탁 ③「신탁법」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 시 신탁재산 귀속권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 시 배당소득세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

(법인세법 제73조의2)

가. 개정취지

○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수익자신탁 · 위탁자신탁에 대한 위임관계 명확화
○ 채권 등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좌 동)
○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 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 ·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 · 위임 간주 ○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 · 위임 간주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별도 특례규정(법인세법 제75조의17)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75조의10, 제75조의11)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 (수탁자의 납세의무)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

	○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수익 분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 시 배당으로 간주 ○ (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예) 신탁재산 처분권 등이 수탁자 → 위탁자로 이전된 경우 –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과세특례 미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 제120조의3)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 (설립)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 –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신탁이 설정된 날 ○ (해산)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간주 * 단,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 ○ (납세지)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 –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지 지정 * 수탁자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불일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⑤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13)

가. 개정취지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 ○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주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 부담 ○ 주수탁자 외 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법인세법 제18조의2·3, 제75조의14,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4)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 (내용)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적용시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배당금액이 소득금액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

(법인세법 제75조의15)

가. 개정취지

○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 (합병)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간주 – 종전의 신탁재산 → 피합병법인 새로 합병된 신탁재산 → 합병법인 ○ (분할)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간주 – 이전하는 신탁재산 → 분할법인 이전되는 신탁재산 → 분할신설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을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인세법 제75조의16)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75조의17, 제75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5)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배제 ▢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 – (이자소득 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신탁의 이익 – (금융회사 등의 범위) 은행 ·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 등 ※ 일반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과 범위 동일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

(법인세법 제109조)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설립 신고 ○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재내용) –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등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신고내용 규정 ○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재내용 – 수탁자 명칭 등 추가 –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법인세법 제109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신고규정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 (신고사유) 新수탁자가 선임,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승계, 主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 (제출서류) 변경 신고서, 변경사실 증명서류 ○ (기재내용) 新수탁자, 승계한 수탁자, 변경 전 · 후 主수탁자의 명칭, 납세지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111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사업자등록 ○ 신설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특례 (좌 동)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113조)

가. 개정취지

○ 구분경리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 경리 ○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신 설>	□ 구분경리 대상 추가 (좌 동) ○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13조, 제76조의13)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소득의 60% – 중소기업 ·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 → 15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0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제19조의2)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 (좌 동) ○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0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table><tr><th>구분</th><th>손금산입 한도액</th></tr><tr><td>1. 법정기부금</td><td>(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td></tr><tr><td>2. 지정기부금</td><td>[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td></tr></table></td><td>▢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td></tr>
</table>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 · 문화 · 교육 · 종교 등 기부금	③ 1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5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세법 제45조,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83조)

가. 개정취지

○ 합병 · 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 ·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 합병 · 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이월잔여기간*동안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 $* \text{기부금한도초과액} \times \frac{\text{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text{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 적용에 관한 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 준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합병 ·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0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법인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을 위한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 다음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음 *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 자산 ·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 <신 설>	□ (적격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을 위한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삭 제)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0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초 · 중 · 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 의무 등 면제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가. 개정취지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세법 제75조의4) ○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추 가>	□ 정의 추가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세법 제112조의2) ○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 (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 시 제출할 의무 <단서 추가>	□ 단서 추가 ○ (좌 동)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면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단서 추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대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가산세율 50% 인하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고 ·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제76조의8)

가. 개정취지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신 설>	□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수익사업 범위 ○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추 가>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추 가>	▢ 비수익사업의 대상추가 ○ (좌 동) – (좌 동) – 건강가정지원센터 ○ (좌 동)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 ❶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❷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 개정취지

○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 (좌 동) ○ 대상 법인 추가 –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 · 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가. 개정취지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원 이하 ○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비의 범위 ○ 매입가액, 양도자산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추 가>	□ 손비 범위 확대 ○ (좌 동) ○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가. 개정취지

○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대손 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① 채무자의 파산 ·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 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발생으로 중재기관 · 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 · 공공기관 등이 확인 ※ 「舊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 · 0000<0003>공정 · 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개발비 요건 보완 ○ (좌 동) ○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가. 개정취지

○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 폐기에 따른 즉시상각 의제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추 가>	□ 의제대상 추가 ○ (좌 동)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19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39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단서 추가>	○ 공개기한 : 3개월 → 4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20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5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요건 또는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부여 금지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단서 추가>	□ 단서 규정 신설 ○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 시 예외 인정 * 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9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❶ 상속세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 시 취소대상인 의무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사용 등 14개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 제3항 · 제8항~제11항) ❷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위반 시 취소대상인 의무 : ①회계감사, ②전용계좌 개설 · 사용, ③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 위반 등	□ 취소사유 보완 ○ (좌 동) ❶ ❷의무*위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 시 취소 대상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7개 의무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2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 (비영리법인 → 국세청) – 추천을 원하는 공익법인은 추천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 까지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 추천신청 및 추천 기한 설정 ○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3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추 가>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 (좌 동)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4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상호금융회사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 은행, 증권 ·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추 가>	▢ 금융회사 대상 추가 ○ (좌 동)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단,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6 가상자산 규정 정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7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평가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 <추 가> <신 설>	□평가대상 자산 · 부채 추가 (좌 동) ○ 가상자산 □ 가상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소득세법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7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시가 산정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① → ② → ③)	□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규정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① (좌 동) ② 제외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제외대상) 가상자산 추가 ③ (좌 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평가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8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가. 개정취지

○ 분할과 분할합병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 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 부문의 분할로 보는 경우 ❶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등 ❷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신 설>	□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좌 동)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 * ❶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❷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9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4조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물적분할 · 현물출자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 (원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 * ❶ 분할법인·출자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 ❷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좌 동)
○ (예외) 분할법인 · 분할신설법인 또는 출자법인 ·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 구조조정*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 (예외) (좌 동)
<추 가>	– 다음의 경우 "최초로" 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 •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 · 분할 · 물적분할 · 현물출자 • 주식 및 관련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 물적분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합병 · 분할 · 물적분할 ·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0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개정취지

○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당초 분할법인 · 출자법인의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규정 ○ 계산방법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법인 –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 당초 분할법인 · 출자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합병 · 분할 · 물적분할 ·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1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89조)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 → ② → 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 · 대량매매 · 바스켓매매

	– 아래에 따른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② (좌 동) ③ (좌 동)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 상장주식 적용요건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2 연결법인간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 유형 ○ 금전, 자산 및 용역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제공하거나, 고리로 차용·제공받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제외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제외 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그 밖에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3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개정취지

○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 기타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 용역제공원가 × (1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거래에서의 수익률)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 용역제공원가 × (1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거래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의 수익률)

3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 보관대상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 작성 · 보관대상 기준금액 상향 ○ 20억 원 → 30억 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5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농협 등 조합법인, 투자회사 ○ 공공기관 · 기관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등 <추 가>	□제출 제외대상 추가 (좌 동) ○ 정비사업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6 비대칭 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가. 개정취지

○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기준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비대칭리스 거래에 대한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 비대칭리스*의 경우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운용리스)에 따른 금액 *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잔가보장약정을 받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37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연 1.8%	▢ 이자율 조정 ○ 연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가. 개정취지

○ 개인 · 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적용대상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조정
○ (대상)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토지	○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예외)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 제외 ① 2018.12.31.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② 2008.12.31. 이전 등록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주택 ③ 2009.6.30까지 계약 체결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④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 신탁업자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2014.12.31. 등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정	(좌 동)
⑤ 8년 장기 임대주택 <단서 신설>	– 법인이 2020.6.17. 이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한정 *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
⑥ 임직원용 사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율인상)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 추가세율 적용) 2020.8.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가. 개정취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단기임대주택 * 20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준수	1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 단기임대주택 삭제, 장기일반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준수 ○ 건설임대주택 등	○ 단기임대주택 삭제, 장기일반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2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2 10년으로 연장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20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변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2020.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40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가. 개정취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단기임대주택 * 20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 20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 추가세율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 신설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배제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1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토지 등의 범위 ○ 임대주택, 사택 등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등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적격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LH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주택 신축·판매 법인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300호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 발생하는 소득	□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추가 ○ (좌 동)
<추 가>	–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주택을 건설·양도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202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외국법인 · 비거주자 소득구분 명확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652호) : 2020.12.22.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3호) : 2021.2.17.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844호) : 2021.3.16. 공포

0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가. 개정취지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 가>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 손금산입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법인세 · 소득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0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인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등 ○ 제세 공과금 <추 가>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 (좌 동) ○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03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 산입 ○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손금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❶세액공제와 ❷손금산입 중 선택 가능 ❶(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❷(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손금산입 방식 삭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가. 개정취지

○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 요건 ○ 「법인세법」상 손비 <추 가>	□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 ○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 · 공동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 연구개발비를 매출액 · 매출총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보완

① 매출액 방법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 × 50% × 외국자회사 등 매출 / 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 ×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② 매출총이익 방법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75%×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 [매출총이익+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 〈국외	(연구개발비용 × 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 ①매출액 방법, ②매출총이익 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국외자회사 매출·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세법 제57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 (특례내용)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 * 국외소득×국내원천징수세율(14%) 한도	○ (좌 동)
○ 적용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6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 부과대상 확대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내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07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세법 제92조, 제93조, 제98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6조, 제156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대상)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하목 –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다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 · 대여 · 인출시 : 가상자산 사업자 ○ (원천징수 금액)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 (납부방법)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세무서 등에 납부 $\text{인별 누적 원천징수액} \times \dfrac{\text{인별 인출액**}}{\text{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 * 현금 · 가상자산을 1년간 미인출시는 다음연도 1월10일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 × 수량 ○ (원천징수 대상 확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 · 확인 * 가능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3년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 면제 적용 가능(비과세 · 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

08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외국법인·비거주자 소득구분 명확화

(법인세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8)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 소득구분 유지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파생결합사채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추 가>	▢ 현행 비거주자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유지 ○ 이자소득 : 2020년 세법개정으로 배당 → 이자로 분류되는 소득 제외 – '파생결합사채 이익' 제외 ○ 배당소득 :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여 현행 유지 – 파생결합사채 이익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일부 분배금* 비과세→ 과세) *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제외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양도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9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절차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 ·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자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 (좌 동)

<추 가> ○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 *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달의 특 집 2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 국세청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 … 최근 가업승계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10년 ○ 고용유지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	□ 사후관리 완화 ○ 기간 단축: 10년 → 7년 ○ 고용유지의무 완화 - (좌 동)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 적용 *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 *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
ㅇ 업종 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ㅇ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예외적 처분 허용 、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추 가〉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1.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 ~ 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 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 사업무관자산(상속 개시일 현재)
> ① 법인세법 § 55조의2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② 법인세법 시행령 § 49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③ 법인세법 시행령 §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제외)

2)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내용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07.12.31. 이전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08.1.1. 이후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 이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60억원 •15년이상 : 80억원 •20년이상 : 100억원
'11.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까지는 공제가능	상 동	상 동

'12.1.1. 이후	상 동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100억원 •15년이상 : 15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13.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상 동	상 동
'14.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200억원 •15년이상 : 300억원 •20년이상 : 500억원
'16.1.1. 이후	공동상속 허용	상 동	상 동
'18.1.1. 이후	상 동	상 동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20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30년이상 : 500억원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1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 (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2) 피상속인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 '20. 1. 1.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3.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 가업용 자산 명세
-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업상속 후 7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 위배한 경우는 위 산식에서'자산처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재계산 ('19.1.1.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자상당액
>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1.2%) / 365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⑥)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소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 ① ~ ③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④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⑤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 기간별 추징율

기간	추징율	기간	추징율
5년 미만	100%	5년 이상 7년 미만	80%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 ·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 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 취득시기 계산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 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18⑪)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II.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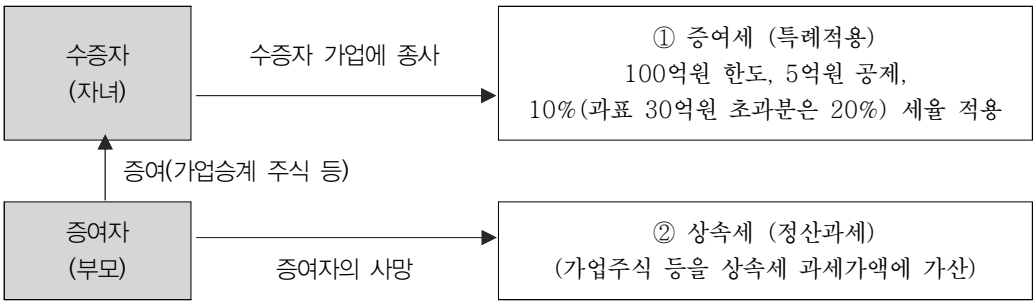

* 증여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공제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증여일	적용가액	적용 한도	사후관리기간
'08. 1. 1.~14. 2. 20.	특례대상 증여가액	30억원	10년
'14. 2. 21. 이후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상동	상동
'15. 1. 1. 이후	상동	100억원	7년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 : Ⅰ. 가업상속공제제도 편 참조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right)$$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함(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⑥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

⑦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⑧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증여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14.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개정 법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 가업승계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이 적용됨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사후관리 경과규정) 2014.12.31. 이전에 가업승계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합니다.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5/100,000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또는 요건 충족시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

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 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증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 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1)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허가 :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허가 :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허가 :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로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2009.1.1.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기한후 신고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가능('10.2.18.이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5. 납세담보의 제공

○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6.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7.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연부연납 허가 후 첫 번째 납부기한 도래 전까지 3년 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20년에 해당합니다.

1)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간 분할납부(3년간 거치 가능)

*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간 분할납부(5년간 거치 가능)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 - \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1)}$$

* 매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2008.1.1.이후 상속 · 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8.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2.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종전에는 신청일 당시 이자율 적용). 다만, 종전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020.2.11. 이후 납부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 규정 적용시에는 계속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 가산금 계산〉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5.3.6.~ '16.3.6.	'16.3.7.~ '17.3.14.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연 2.5%	연 1.8%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2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1.1.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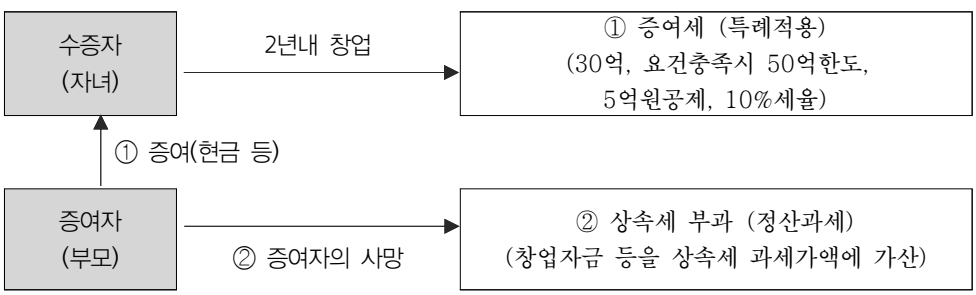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3)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 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5/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 계산산식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

**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5/10,000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30(5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5억원)×10%(20%)

사후관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0.3%	-
	증여세 추징 (이자 상당액 가산)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7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7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 * 20.2.11. 이후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7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재차증여재산가산배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 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1)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2)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3)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2019.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분율 50% 초과시 30% 가산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4)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 (감자), 제29조의(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 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 · 증여받는 경우 상속 ·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 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2025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저변 최대 2배로 넓힌다

– 중소벤처기업부 –

□ 세계적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하는 창업기업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현지화(PoC, Proof of Concept) 창업기획, 금융, 판매 등 일괄 지원

□ 소상공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시스템 마련

□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물류고도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고, 기술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 판매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5월 12일(수)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1.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수립배경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2020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에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1.1분기 수출이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19.1분기 대비 13.9% 증가
  '20.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월별 중소기업 수출도 '19년 동월 대비 최대 21.6%까지 증가

중기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일반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대상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전략을 마련한 점이 지난 대책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 수출 중소기업 수(전체 대비 비중) : ('20) 94,900개(96.1%)

또한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5만개, 온라인 수출과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를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했으며, 정책목표 달성 시 수출 중소기업 수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수출 중소기업 수 : ('20) 94,900개 → ('25) 최대 약 18.5만개 (94,900개 + 최대 약 9만개 증가)

2. 대책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비 전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로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

목표	1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수 5만개 달성 * '20년 기준 약 2.6만개
	2 2025년까지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육성 * '20년 기준 약 2.4만개
	3 2025년까지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 * '20년 기준 온라인수출 中企 약 0.7만개 / '19년 기준 기술수출 中企 약 0.3만개

정책방향	1 (스타트업) 유망 스타트업 수출지원체계 혁신	2 (소상공인)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3 (일반 중소기업) 온라인·기술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❶ 개방형 혁신 통한 스타트업 수출 선도모델 확산	❶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협업체계 마련	❶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고도화 등 지원
	❷ KSC 기능 고도화 등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혁신	❷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수출 지원프로그램 도입	❷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마케팅 등 지원 강화
	❸ 유망 스타트업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❸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❸ Brand K 분야별 특화 지원 및 성과확산 추진

(1)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지원체계 혁신

◇ 글로벌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혁신을 통해 수출을 이루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제품·기술 현지화 지원 등 뒷받침

◇ 케이(K)-스타트업센터 등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의 투자유치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망 스타트업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1 개방형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수출 선도모델 창출 및 확산

○ (선도모델 발굴) 글로벌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제품양산 등 수출을 이루는 스타트업-글로벌기업 간 선도모델 발굴(연 100개)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개방형혁신 플랫폼, 포춘(Fortune) 500 커넥트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제휴사업 발굴, 1:1 비즈니스 미팅 등 네트워킹 촉진(연 1,000여개 스타트업 참여)

○ (선도모델 현지화 지원) 선도모델 스타트업에 대한 현지화(PoC) 액셀러레이팅과 사업화자

금, 금융 · 투자유치 ·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중기부 등)

* (참고 : PoC(Proof-of-Concept) 지원) 현지 글로벌기업 내외부 시스템을 테스트베드 삼아, 상용화 전인 스타트업의 신기술 등을 접목·활용하면서 현지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것

2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 고도화 등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혁신

○ (글로벌투자유치 지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기능에 한국벤처투자의 글로벌투자유치 지원을 연계하는 원루프 지원시스템* 마련('21.하, 중기부)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입주 스타트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펀드를 조성(한국벤처투자, 연 2,000억원)하고, 입주 스타트업 대상 펀드운용사 기업설명(IR) 등 정기 개최

○ (수출 특화 프로그램) 스타트업 신수출 모델별*로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수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21.하)

* (예) 앱(App), 게임 등 수출 스타트업 → 현지 문화 등을 고려한 홍보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지원

3 글로벌전시회 참여 촉진 등 유망 스타트업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글로벌전시회 참여) '21년 한국의 독일 세계가전박람회(IFA, 9월) 주빈국 계기를 활용해 유망 벤처 · 스타트업 중심의 통합 전시관 운영(중기부)

- 참여 스타트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추진('21.하, 질병청 등)

(2)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구축

◇ 소상공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수출지원기관 간 협업시스템 마련

◇ 소상공인 맞춤형 온·오프라인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1 연 1,000개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제도 · 협업체계 마련

○ (제도적 기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 · 선정하는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제도' 신설('21.하, 중기부, 판로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 13개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소상공인 · 수출지원기관이 협업해 연 1,000여개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21.하~, 500개 시범 지정)

○ (협업체계) 수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 수출지원기관이 수출 역량진단, 자금, 해외마케팅을 연계 지원하는 협업시스템 구축('21.하)

2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온 · 오프라인 수출 지원프로그램 도입

○ (온라인수출) 해외에서 관심이 있을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연 100개)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 온라인전시회를 통해 바이어 연결 등 지원

- 온라인수출 전문셀러와 소상공인을 1:1로 매칭 →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온라인몰 수출대행 등 지원('21.~, 연 1,500개)

○ (바이어투어 · 금융 등 지원) 해외 빅바이어를 초청해 소상공인 집적지구 현장투어를 추진하고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기반* 구축

* 1,500억원 규모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에 수출유망 소상공인 등을 포함('21.3분기)

3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및 성공사례 확산

○ (수출교육)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플랫폼('지식배움터')을 통해 기본적인 수출신고, 국가별 시장전망 및 e커머스 활용방안 등 실무교육 추진('22.~, 소진공)

○ (수출컨설팅) 소상공인의 온라인몰 입점, 상품리스팅 및 배송 최적화 등 온라인수출 全단계 컨설팅 지원('21.하~, 연 1,000개 / 중진공)

○ (성공사례 확산) 소상공인 수출 성공스토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드라마로 제작 확산하고, 전국 6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4개 전광판 활용 홍보('21.하)

(3) 온라인수출 · 기술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온라인수출붐 확산을 위해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공동물류 인프라 활용, 물류센터 구축 등 물류고도화 집중 지원

◇ 중소기업 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자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브랜드 케이(Brand K)' 기업에 대한 특화지원체계 구축

1 온라인수출붐 확산을 위해 온라인수출 중기 물류 고도화 등 지원

○ (물류고도화 지원)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공동물류센터 활용, 자체 물류센터 건립, 물류관리 최적화 등 물류고도화 패키지 지원

구 분	주요내용
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 '22년 조성 예정인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에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주 지원(국토부) * 시세보다 저렴하게 활용토록 지원 검토
물류센터 구축 지원	·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게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내 입지 제공(국토부) →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비용을 최대 60억원까지 연계 지원(중기부·중진공)
물류관리 최적화 지원	· 물류창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게 물류관리 최적화 소프트웨어 보급 등 지원('22~, 중기부)

○ (투자유치 등 성장기반 구축) 약 0.4조원 규모의 수출지원펀드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IR)을 개최('21.3분기)하고, 온라인몰 스마트화 지원

2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 · 해외마케팅 등 지원 강화

○ (기술 교류 활성화) 해외 기술 수요 · 협력기관과 국내 기술 수출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21. 30여회)하고,

–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 화상상담회 및 해외 수출상담회 추진('22)

○ (현지마케팅 지원) 기술 구매 수요가 많은 국가를 선정('21.3~4분기) → 현지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술수출 수출인큐베이터(BI) 특화프로그램* 도입('22.1분기)

* 기술 수출 유망기업 수출인큐베이터(BI) 우선 입주, 현지 수요기업 · 바이어 대상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 (금융 · 연구개발 등 지원) 3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신설('21.하, 지원목표제)하고, '기술수출 혁신개발 사업' 신규 기획 검토 ('22)

3 '브랜드 케이(Brand K)'분야별 특화지원 및 상생협력 등을 통한 성과확산 추진

○ (1:1 특화지원) 케이(K)-리빙, 케이(K)-뷰티, 케이(K)-푸드 등 소비재 분야별 브랜드케이(K) 기업에 대한 금융 · 연구개발 · 물류 ·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 (예) 케이(K)-뷰티 :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공동 홍보모델을 선정하여 제품 홍보·마케팅 추진 등

○ (상생협력)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인천공항)에 브랜드케이(K) 제품 우선 입점을 추진('21.4분기)하고, 민간 협업* 브랜드 케이(Brand K) 국내 · 외 판로 확대 지원

*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홈쇼핑 방송채널을 활용한 브랜드케이(K) 제품 국외 판로 지원('22.상) 등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전 보다도 나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을 최대한 지원해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 밝히며,

"대책이 수출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11개 과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신사업 창출 등을 이끌 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술개발 지원

□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2년간) 지원
 * 1차(상반기, 24개 선정) : 총 347개 지원(경쟁률 약 15: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스마트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사업'의 하반기 지원과제를 5월 26일(수)부터 6월 2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상반기(1차)에는 총 347개 과제가 신청해(경쟁률 약 15:1)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① 기업 내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가상 사무실을 구성하고 사용자 아바타를 통해 의사소통과 협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② 세차, 세탁 등 동네 소상공인들의 정기구독 주문·결제, 이익분배를 지원하는 스마트 계약 솔

루션 등이 선정됐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업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서비스 중소기업이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다수 공급기업 간 기술 융합을 통한 협업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다.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 수요기업 매칭형과 공급기업 단독형은 과제당 5억원까지, 컨소시엄형 과제는 '참여기업수(최대 3개)x5억원'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02)으로 문의

- 스마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사업 개요

□ 목적 :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지원규모 : 60.44억원 (사업비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35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중을 80%로 상향 조정 예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화에 활용되는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고도화 개발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예시)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업 혁신	■ 데이터 수집·비교 등 단순 반복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처리하고, 인지기술을 적용해 인지능력이 필요한 진단, 자료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솔루션 ■ 상담, 주문, 불만처리 등의 업무를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 실시간 자동으로 응대하고, 관련 통계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를 피드백하는 솔루션
온라인 경제	■ 상품 주문 및 거래, 상품추천,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온라인 마켓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 기존의 대면 방식의 교육·회의 등을 스마트기기나 PC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이나 화상회의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
공공 문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전기사용량, 기상정보 등)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이나 재해 예방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 ■ 업종이나 지역 등의 공통·유사점을 활용해 해당 그룹 내의 기업·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솔루션(업종공통 솔루션 등)

□ 추진일정 : 사업공고(2월/5월) →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3월/6월) → 평가 · 선정(3~4월/7~8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5월/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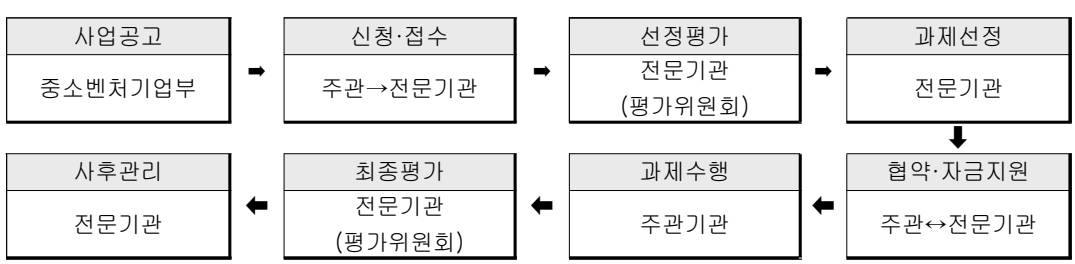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 의결

– 고용노동부 –

□ 정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 국회는 '20.12.8. 「임금채권보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사항

① 근로자가 체당금*을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하면서,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 국회는 '20.12.8.「근로복지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사업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 ·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공동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

□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체당금	ㅇ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 인정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20.1.1.~) 지급
소액 체당금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19.7.1.~)

□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체당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 지급청구서 송부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소액 체당금	임금청구소송 제기 (근로자 → 법원) ▸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참고2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및 설립 현황

□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15.7.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도입, '16.1.21.시행)

○ (기금 조성) ①사업주의 출연, ②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유가증권 · 현금 · 부동산 등)

○ (수혜 대상) ①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②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 (설립) 공동으로 이익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법인 설립

– 참여 사업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립 가능

⇒ 대 · 중소기업, 원 · 하청,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 · 업종 · 지역별 등

○ (복지사업)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기금법인의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생활원조
-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설치 및 운영
  - *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사택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

○ (사업재원) ①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50% 또는 80%), ③일정 요건 충족 시 기본재산의 일부(20% 또는 30%)

□ (설립 현황) '19년을 기점으로 '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 ('20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계	설립 연도별					형태별						
	'16	'17	'18	'19	'20	원 · 하청	협력 업체	동종 업종	지역	계열 사	가족 회사	기타
262	14	17	18	31	182	14	60	109	13	15	5	46

통 화 명	5월 3일(월)	5월 4일(화)	5월 6일(목)	5월 7일(금)	5월 10일(월)
미 달 러 (USD)	1109.60	1119.30	1121.10	1125.50	1121.40
위 안 화 (CNH)	171.48	172.71	173.21	173.61	173.61
일 본 엔 (JPY)	1015.05	1026.27	1026.51	1032.05	1033.12
유 로 화 (EUR)	1334.63	1349.76	1345.99	1357.63	1364.80
영 국 파 운 드 (GBP)	1533.41	1556.39	1558.89	1563.71	1573.16
캐 나 다 달 러 (CAD)	903.44	911.67	913.54	925.84	924.79
홍 콩 달 러 (HKD)	142.87	144.12	144.30	144.88	144.40

통 화 명	5월 11일(화)	5월 12일(수)	5월 13일(목)	5월 14일(금)
미 달 러 (USD)	1144.60	1199.10	1123.50	1130.60
위 안 화 (CNH)	173.48	174.29	174.62	175.21
일 본 엔 (JPY)	1024.21	1029.96	1024.48	1032.75
유 로 화 (EUR)	1353.07	1359.20	1356.68	1365.60
영 국 파 운 드 (GBP)	1574.82	1582.13	1579.98	1588.21
캐 나 다 달 러 (CAD)	921.77	925.11	926.67	929.04
홍 콩 달 러 (HKD)	143.53	144.06	144.67	145.54

통 화 명	5월 17일(월)	5월 18일(화)	5월 20일(목)	5월 21일(금)
미 달 러 (USD)	1129.50	1133.00	1133.10	1132.20
위 안 화 (CNH)	175.24	175.95	176.03	175.85
일 본 엔 (JPY)	1032.50	1037.59	1037.40	1040.48
유 로 화 (EUR)	1371.95	1376.99	1379.66	1384.28
영 국 파 운 드 (GBP)	1592.54	1602.18	1599.14	1606.20
캐 나 다 달 러 (CAD)	932.28	938.77	933.82	938.30
홍 콩 달 러 (HKD)	145.42	145.88	145.93	145.85

통 화 명	5월 24일(월)	5월 25일(화)	5월 26일(수)	5월 27일(목)
미 달 러 (USD)	1126.90	1127.60	1122.80	1118.60
위 안 화 (CNH)	175.25	175.31	175.24	174.89
일 본 엔 (JPY)	1034.57	1036.25	1032.13	1024.88
유 로 화 (EUR)	1372.90	1377.42	1375.60	1364.08
영 국 파 운 드 (GBP)	1594.11	1596.17	1588.54	1579.24
캐 나 다 달 러 (CAD)	933.68	935.88	931.01	922.25
홍 콩 달 러 (HKD)	145.14	145.23	144.64	144.10

※ 상기의 기준 · 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